



제426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18세 이상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 지급>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34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음.

이러한 조세감면제도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치자금의 자발적인 기부와 원활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이나,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의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 및 형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 구직자 및 은퇴자, 저소득층 등 집단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2024년 총선을 기준으로 유권자는 4,425만명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23년 기준 2,085만명이고 그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은 1,396만 명에 불과함.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을 더해도 유권자의 절반 가량은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음.

또한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총액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66억 원에 불과해 현행제도는 정치기부금 활성화에 한계가 있음. 그리고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및 후보자·예비후보자도 정치후원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되면서 정치기부금 활성화의 필요성이 커짐. 정치기부금을 풀뿌리민주주의의 참여 수단으로 활발히 이용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함.

최근 내란 정국에서 청년 세대를 비롯해 모든 세대 및 계층의 국민들이 민주주의 헌정 수호에 대한 강렬한 열의와 희생을 보여줌. 이는탄핵을 넘어 정치적 평등에 대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더 강한 민주주의를 위해 더 많은 유권자들이 다양하고 평등하게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세감면제도 중 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재고하고자 함(안 제4장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위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6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후원금·기탁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정치후원권의 발행 및 사용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4장의2 정치후원권</u>
<u><신설></u>	<u>제24조의2(정치후원권 발행·지급)</u> <u>① 국가는 국민이 이 법에 따른 정치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일만원의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정치후원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5매씩 지급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의4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연도부터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u> <u>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권의 발행·지급·사용, 그 밖에</u>

	<u>정치후원권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신 설>	제24조의3(정치후원권의 유효기간) <u>정치후원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발행일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u>
<신 설>	제24조의4(정치후원권의 사용 및 제한) ① <u>정치후원권은 후원금 및 기탁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u> <u>② 정치후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u>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생략) <신 설>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제24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권을 후원금 및 기탁금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2항을 위반하여 정치후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 또는 판매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59조(조세의 감면) ① 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에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제59조(조세의 감면) ① ----- ----- ----- ----- -----

<u>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u>은 해당 과세연도의 <u>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u>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u>증여세를 면제한다.</u>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의 정치자금에 대한 소득세 폐지 부분(§59조)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후원권 발행·지급 등에 관한 내용에 한하여 검토하였음.

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 지급

현행법은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후원금 포함)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¹⁾하고 있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유권자는 4,428만명²⁾이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2023년 기준 2,085만명이고, 이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은 1,396만명에 불과³⁾하여 유권자의 3분의 2이상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현황(2023년 귀속분)⁴⁾을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은 78만 3,317명으로 이들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480억 3,000만원이었음.

1) 「정치자금법」

제59조(조세의 감면) ①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총람(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국세청 제출자료(2025.3.19.)

4) 국세청 제출자료(2025.3.19.)

그 중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230억 9,520만원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근로자가 기부한 정치후원금 38억 3,200만원의 6배 이상에 달하는데,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에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인원은 18만 4,290명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정치후원금 기부자 16만 2,121명과 거의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후원금 기부에 있어서도 소득에 따른 양극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정치후원금 세액 공제 관련 세부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이에 개정안은 조세감면제도 중 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 하여 국가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동일하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후원금 또는 기탁금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18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매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할 경우 매년 약 2조 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바, 이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선거보조금 466억원 대비 약 4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므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치후원권 제도 도입 시 재정소요 추계》

구분	계상기준	계상금액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보조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총수(43,994,247명) × 보조금 계상단가(1,058원)	약 466억원
정치후원권	18세 이상 국민 수(44,293,333명 × 5만원)	약 2조 2,000억원

* 18세 이상 국민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준으로 산정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둘째,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정치후원권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후원금 또는 기탁금으로 사용할 지 여부의 불확실성, 사용되지 않은 정치후원권 처리방식의 불명확성,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정치후원금이 편중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동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치후원권의 사용 활성화 방안과 균형있는 배분을 위한 제도적 보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 기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치적 평등 제고를 위한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도한 재정 소요를 수반한다는 점 및 상시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 합계인 4,262억원보다 정치후원권의 규모가 과다해 매회계연도마다 불용액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나. 정치후원권의 사용·제한 및 처벌 규정

개정안은 정치후원권의 사용을 후원금 또는 기탁금에 한정하고, 이를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형벌은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성이 있을 정도의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에 해당하는 과태료와는 차이가 있음.⁵⁾

정치후원권의 불법 환전 행위는 단순한 의무태만에 해당하기보다는 ‘평등한 정치기부금의 활성화’라는 목적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제재를 행정형벌로 규제한다면 정치후원권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행정목적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는 정치후원권의 양도·대여·판매를 알선하거나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고, 이를 양도·대여·판매한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정치후원권을 단순 실수 등에 따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5)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p693.

이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와 적절성과 해당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정치후원권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환전한 경우, 행정형벌과 별도로 정치후원권의 지급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현행법⁶⁾은 ①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지출한 자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자, ②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③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급대상·목적·사용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이들을 규율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법 환전행위를 한 개인에 대한

6) 「정치자금법」

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회계책임자가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경우 당해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한 회계책임자의 선임권자
2. 제2조(기본원칙)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이 확인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지출한 자 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자
3. 제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4. 제4조(당비)제2항·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 등)제3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비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자
5.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6.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한도액을 위반하여 기부한 자

처벌규정은 없고, 가맹점에 대해서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⁷⁾하고 있으며, 국가가 발행하는 ‘평생이용교육권’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따라 이를 판매·대여한 사람과 이를 빌린 사람 및 알선한 사람까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⁸⁾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권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 또는 대여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에 관하여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4.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점

8) 「평생교육법」

제45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

다. 정치후원권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권 제도운영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 기부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후원권의 발행·지급·사용 등 전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 기부 내역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직선거 및 위탁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치후원권 제도운영까지 추가로 맡게 될 경우, 기존의 업무와 함께 새로운 제도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은 정치후원권 발행 등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를 때 시스템 구축에만 통상 3년 이상이 소요되므로 부칙의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므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

문 의 처
02)6788-5336

[참고자료]

《정치후원금 세액 공제 현황(2023년 귀속분)》

소득분위 (억원)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백만원)				
해당분위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명)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합계	6,978,136	5,231,877	597,839	783,317	23,990	24,040	21,809	3,659
상위 1%	655,616	602,278	184,999	18,497	957	7,422	870	1,152
상위 2%	315,586	272,187	59,193	21,774	1,017	1,319	925	198
상위 3%	263,040	222,103	42,094	21,765	1,045	1,047	950	158
상위 4%	232,239	192,626	32,261	21,191	995	990	904	149
상위 5%	210,336	172,285	25,866	20,326	942	1,423	856	214
상위 6%	193,097	156,644	22,106	18,359	846	1,532	769	240
상위 7%	179,968	144,451	19,320	16,812	759	468	690	70
상위 8%	170,059	134,981	17,128	15,878	715	448	650	67
상위 9%	161,737	126,339	15,120	15,222	679	393	618	59
상위 10%	154,339	119,350	13,565	14,466	628	329	571	49
상위 11%	147,720	113,333	12,276	14,743	626	386	569	59
상위 12%	141,755	107,769	11,149	13,989	577	377	524	58
상위 13%	136,159	102,827	10,242	13,765	545	313	496	47
상위 14%	130,934	98,201	9,463	13,413	517	293	470	44
상위 15%	125,992	94,000	8,817	13,518	496	219	451	33
상위 16%	121,383	90,301	8,299	13,652	483	274	439	41
상위 17%	117,045	85,866	7,323	13,407	452	238	411	36
상위 18%	112,884	82,191	6,777	13,272	454	213	413	32
상위 19%	108,934	79,048	6,356	13,717	446	223	406	33
상위 20%	105,188	75,997	5,948	13,467	436	196	397	29
상위 21%	101,674	73,234	5,575	13,868	438	214	398	32
상위 22%	98,512	71,165	5,325	14,493	423	267	384	40
상위 23%	95,508	68,365	4,922	13,746	395	176	359	26
상위 24%	92,586	66,156	4,634	13,634	383	142	349	21
상위 25%	89,733	63,835	4,317	13,028	365	137	332	21
상위 26%	87,001	61,811	4,015	12,788	355	169	323	25
상위 27%	84,355	59,678	3,723	12,244	339	126	308	19
상위 28%	81,794	57,648	3,465	11,988	319	163	290	24
상위 29%	79,341	55,782	3,218	11,547	305	115	277	17
상위 30%	77,003	53,948	2,978	11,284	308	711	280	107
상위 31%	74,832	52,481	2,813	11,547	291	114	264	17
상위 32%	72,761	50,742	2,574	10,475	256	121	233	18
상위 33%	70,693	49,241	2,388	10,320	250	98	227	15
상위 34%	68,757	47,708	2,195	9,887	234	70	213	10
상위 35%	67,018	46,417	2,044	9,755	237	88	216	13
상위 36%	65,363	45,258	1,902	9,636	230	78	209	12
상위 37%	63,792	44,143	1,779	9,824	228	235	207	35
상위 38%	62,317	43,004	1,620	9,111	221	520	201	78
상위 39%	60,838	41,861	1,489	8,769	198	149	180	22
상위 40%	59,424	40,870	1,385	8,806	197	137	179	20
상위 41%	58,044	39,909	1,267	8,350	188	234	171	35
상위 42%	56,712	38,982	1,176	8,298	181	104	164	16
상위 43%	55,404	37,861	1,053	8,243	182	167	165	25
상위 44%	54,149	37,048	973	8,129	174	108	158	16
상위 45%	53,003	36,172	936	9,391	195	96	177	14
상위 46%	51,973	35,454	833	7,770	169	109	154	16
상위 47%	50,824	34,589	775	7,869	171	73	156	11
상위 48%	49,705	33,814	714	7,520	164	68	149	10
상위 49%	48,639	32,964	662	7,643	166	131	150	20
상위 50%	47,580	32,280	609	7,219	155	103	141	15

소득분위 (억원)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백만원)				
해당분위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인원(명)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상위 51%	46,523	31,391	566	7,351	155	66	141	10
상위 52%	45,484	30,733	525	6,815	141	82	128	12
상위 53%	44,456	29,909	495	7,169	144	66	131	10
상위 54%	43,457	29,327	465	6,784	135	77	122	12
상위 55%	42,467	28,644	446	7,794	151	86	138	13
상위 56%	41,680	28,259	416	6,655	125	44	113	7
상위 57%	40,665	27,368	384	6,643	127	48	116	7
상위 58%	39,758	26,788	368	6,915	126	45	114	7
상위 59%	38,790	26,084	345	6,562	117	56	107	8
상위 60%	37,915	25,372	329	6,411	115	61	105	9
상위 61%	37,017	24,817	314	6,146	108	37	98	6
상위 62%	36,102	23,962	294	6,515	114	42	103	6
상위 63%	35,297	23,476	278	6,093	103	40	93	6
상위 64%	34,387	22,745	262	5,914	90	14	82	2
상위 65%	33,664	22,244	259	6,241	93	14	85	2
상위 66%	32,904	21,819	248	5,627	89	22	81	3
상위 67%	32,144	21,233	240	5,875	90	29	82	4
상위 68%	31,741	21,797	266	6,014	90	13	82	2
상위 69%	31,252	19,319	195	5,676	91	14	83	2
상위 70%	30,055	20,005	224	4,361	71	21	65	3
상위 71%	28,953	18,972	205	4,248	67	15	61	2
상위 72%	27,733	18,082	189	3,980	61	9	55	1
상위 73%	26,500	17,351	176	3,258	47	5	43	1
상위 74%	25,104	16,231	156	3,036	44	4	40	1
상위 75%	23,723	15,172	136	2,569	35	2	32	0.3
상위 76%	22,283	14,143	117	2,144	28	1	26	0.2
상위 77%	20,942	12,794	93	2,027	28	1	25	0.1
상위 78%	19,521	11,867	76	1,437	19	1	17	0.2
상위 79%	18,012	10,695	55	1,113	14	0.2	12	0.0
상위 80%	16,533	9,307	32	913	12	1	11	0.1
상위 81%	15,258	8,519	16	647	7	1	7	0.1
상위 82%	14,226	7,977	5	481	5	0.02	5	0.003
상위 83%	13,097	7,234	0.39	365	4	0.02	4	0.003
상위 84%	12,116	6,913	-	207	2	0.09	2	0.014
상위 85%	11,306	5,730	0.02	257	3	-	3	-
상위 86%	10,177	5,199	0.04	187	2	-	2	-
상위 87%	9,145	4,408	-	126	1	-	1	-
상위 88%	8,131	3,620	0.02	123	1	-	1	-
상위 89%	7,105	2,842	0.03	103	1	-	1	-
상위 90%	6,136	2,128	-	59	1	-	0.5	-
상위 91%	5,272	1,443	0.01	40	0.3	-	0.2	-
상위 92%	4,339	671	-	20	0.1	-	0.1	-
상위 93%	3,359	89	0.03	1	0.001	-	0.0005	-
상위 94%	2,749	-	-	-	-	-	-	-
상위 95%	2,322	-	-	-	-	-	-	-
상위 96%	1,849	-	-	-	-	-	-	-
상위 97%	1,413	0.022	0.004	-	-	-	-	-
상위 98%	1,020	0.019	0.004	-	-	-	-	-
상위 99%	569	0.022	0.004	-	-	-	-	-
상위 100%	136	0.0004	0.0001	-	-	-	-	-